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국(局) 신설을 통해 조직 통솔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주요 개편내용 >

- 기구 총괄 : (본청) 국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변동없음
  - 신 설 : 도시안전국 ⇨ 3국 체제
  - 변 경 : 행정지원국 ⇨ 기획재정국, 경제건설국 ⇨ 관광경제국  
기획실 ⇨ 기획예산과, 행정과 ⇨ 행정담당관
  - 폐 지 : 정책담당관
  - 분 리 : 관광문화과 ⇨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구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국	부서	담당	국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기 존	2	36	170	2	19	89	7	32	1	4	1	2	8	43
변 경	3	36	169	3	19	88	7	32	1	4	1	2	8	43
증 감	+1	-	△1	+1	-	△1	-	-	-	-	-	-	-	-

□ 기구(본청) 직제 순서 변경

- 행정담당관      부군수 직속
- 기획재정국(6)      기획예산과 ⇨ 인재육성과 ⇨ 복지정책과 ⇨ 가족복지과 ⇨ 세정과  
⇨ 회계과
- 관광경제국(5)      관광정책과 ⇨ 문화예술과 ⇨ 올림픽체육과 ⇨ 경제과 ⇨ 민원토지과
- 도시안전국(7)      도시과 ⇨ 허가과 ⇨ 건설과 ⇨ 안전교통과 ⇨ 산림과 ⇨ 환경과  
⇨ 현안사업추진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31.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국(局) 신설을 통해 조직 통솔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주요 개편내용 >

- 기구 총괄 : (본청) 국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변동없음
  - 신 설 : 도시안전국 ⇨ 3국 체제
  - 변 경 : 행정지원국 ⇨ 기획재정국, 경제건설국 ⇨ 관광경제국  
기획실 ⇨ 기획예산과, 행정과 ⇨ 행정담당관
  - 폐 지 : 정책담당관
  - 분 리 : 관광문화과 ⇨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구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국	부서	담당	국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부서	담당
기 존	2	36	170	2	19	89	7	32	1	4	1	2	8	43
변 경	3	36	169	3	19	88	7	32	1	4	1	2	8	43
증 감	+1	-	△1	+1	-	△1	-	-	-	-	-	-	-	-

#### □ 기구(본청) 직제 순서 변경

- 행정담당관      부군수 직속
- 기획재정국(6)      기획예산과 ⇨ 인재육성과 ⇨ 복지정책과 ⇨ 가족복지과 ⇨ 세정과  
⇨ 회계과
- 관광경제국(5)      관광정책과 ⇨ 문화예술과 ⇨ 올림픽체육과 ⇨ 경제과 ⇨ 민원토지과
- 도시안전국(7)      도시과 ⇨ 허가과 ⇨ 건설과 ⇨ 안전교통과 ⇨ 산림과 ⇨ 환경과  
⇨ 현안사업추진과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장급(4급) 기구의 설치 자율화 등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었음.

####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주요 개정사항('24. 3. 29. 시행) >

##### □ 국장급(4급) 기구 설치 자율화

-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제6조)
-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도와 협의절차를 폐지하되, 3급 이상의 경우 협의 존치(제21조)

##### □ 직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 국장급 기구설치는 자율화하되, 4급 정원은 3명의 범위 내에서 임명 명시(별표3)

##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 개편을 통해 통솔 체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주요 내용은 본청 체제를 ‘2국 1실 1담당관 17과 89담당’ 에서 ‘3국 1담당관 18과 88담당’ 으로 하고 담당 단위를 개편하는 것으로,
- 국을 신설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 의 3국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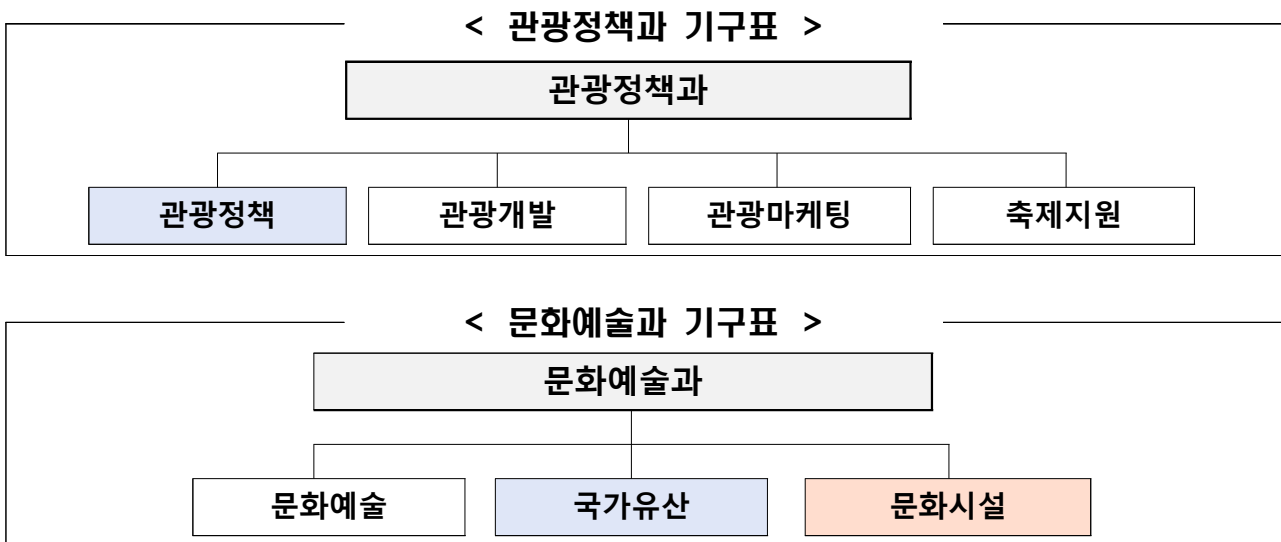
기획재정국 (6과, 정원 133명)	관광경제국 (5과, 정원 97명)	도시안전국 (7과, 정원 138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기획재정국</b> (4급)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기획예산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인재육성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복지정책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가족복지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세정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회계과</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관광경제국</b> (4급)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관광정책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문화예술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올림픽체육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경제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민원토지과</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b>도시안전국</b> (4급)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도시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허가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건설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안전교통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산림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환경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현안사업추진과</div> </div>

- 부문별 국 중심의 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행정 기능 독립과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담당관’ 을 독립 편성함.

○ 민선8기 전반기 정책 총괄 관리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던 ‘정책 담당관’은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원화하고자 기획예산과에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하고자 함.

- 총괄정책, 사업발굴, 인구정책 업무 이관 ⇒ 기획예산과

○ 관광 및 문화 업무 각 분야의 역량을 집중하고 민선8기 공약 사항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문화과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로 분리 편성함.



※ 관광정책팀, 국가유산팀 명칭 변경, 문화시설팀 신설

○ 또한, 담당 단위 개편사항 중 건강증진과 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담당 명칭을 ‘건강증진’에서 ‘평창권역’으로 변경하고 ‘대화권역’, ‘봉평권역’이라는 2담당을 신설하였는데, 대외적으로 담당 명칭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서명	담당명칭	주요내용
건강증진과	평창권역(前건강증진)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평창·미탄)
	대화권역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방림·대화)
	봉평권역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봉평·용평)

※ 평창권역팀 명칭 변경, 대화권역팀, 봉평권역팀 신설 / 진부권역(건강생활지원센터)

○ 한편, 인사 조직개편 관련 의회 사전설명 시 제출된 평창군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평창군 의회	행정담당관 ⇨ 부군수 직속 개편	행정담당관 ⇨ 부군수 직속 개편	반영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분과	반영
	인구정책팀 ⇨ 인재육성과 이관 부적합, 기획실 이관	인구정책팀 ⇨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변경	반영
	도서관팀 ⇨ 문화예술과 이관 부적합	도서관팀 ⇨ 인재육성과 소관으로 변경 문화예술과 3팀으로 운영	반영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4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방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민원 등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편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 □ 기구(본청) 직제 순서 변경

- 행정담당관 부군수 직속
- 기획재정국(6) 기획예산과 ⇨ 인재육성과 ⇨ 복지정책과 ⇨ 가족복지과 ⇨ 세정과 ⇨ 회계과
- 관광경제국(5) 관광정책과 ⇨ 문화예술과 ⇨ 올림픽체육과 ⇨ 경제과 ⇨ 민원토지과
- 도시안전국(7) 도시과 ⇨ 허가과 ⇨ 건설과 ⇨ 안전교통과 ⇨ 산림과 ⇨ 환경과 ⇨ 현안사업추진과

## □ 국·실과 단위 개편사항

### ① 기획예산과

- 기능 약화(공모사업) 분야 ⇨ 동원육영회 유치·재정기능 통합(재정지원)
- 기획재정국 소속 배치를 통한 전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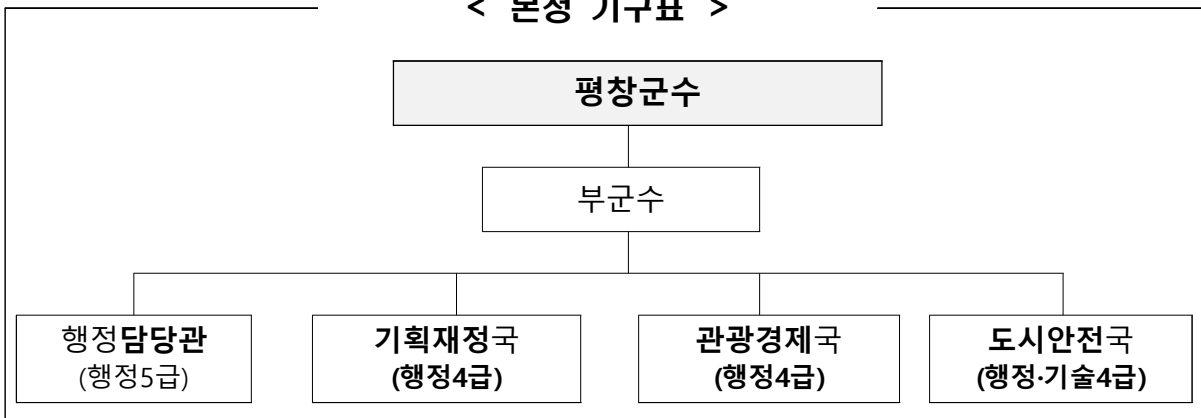
### ② 행정담당관

- 국 중심의 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 독립(인사·근평 등 공정성 확보)
- 노사관리(노무관리) + 사회단체(행정) 통합 ⇨ 단체협력(노사 + 단체관리)

### ③ 국 신설(+1) ⇨ 국장 통솔범위 완화 및 업무 책임성 강화

-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국 설치 상한 폐지(국 신설 자율화)
- 국 소관부서 감축으로 업무 전문성 및 국·과장 책임 강화

< 본청 기구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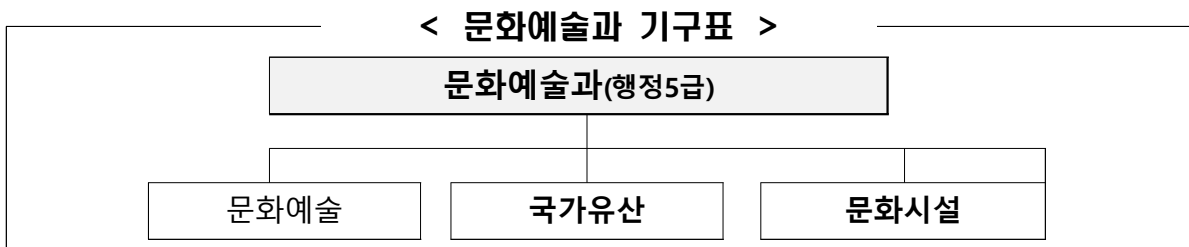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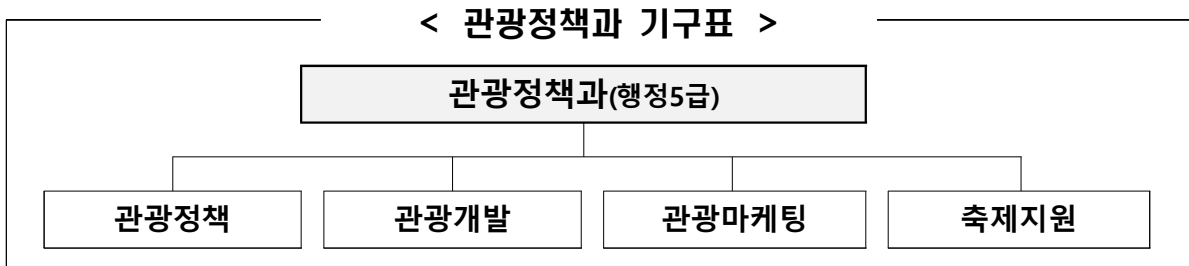


④ 정책담당관(기능식퇴 분야 ⇨ 폐지)

- 민선8기 전반기 총괄 관리조정 및 정책보좌 역할 수행
- 정책담당관 소속 업무 이관(총괄정책팀, 사업발굴팀 ⇨ 기획예산과)
- 정책담당관 소속 부서 이관(인구정책팀 ⇨ 기획예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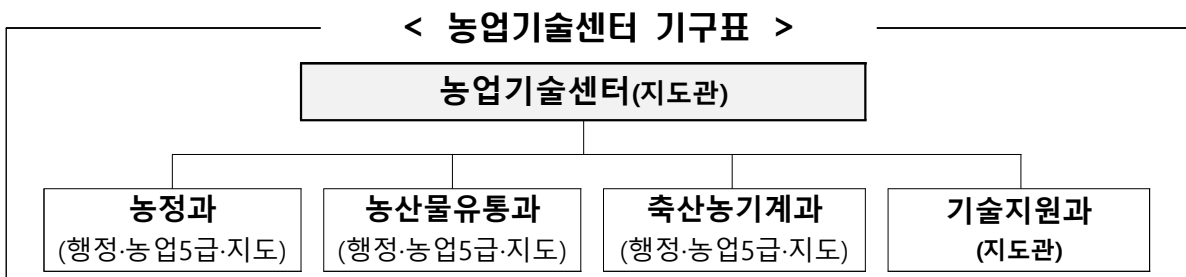
⑤ 관광문화과(부서 분리 ⇨ 관광·문화분야 기능 강화)

- 관광·문화업무 분리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력 강화
- 관광기획팀 ⇨ 관광정책팀, 문화재팀 ⇨ 국가유산팀 명칭 변경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팀 명칭 변경
- 문화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화시설팀 신설



⑥ 농업기술센터

-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기술지원과장 직위 지도관 단수 책정



## □ 담당 단위 개편사항

### ① 담당 명칭변경

부서명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내용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재정지원	· 공모사업 + 재정업무(예산팀 소관)
행정담당관	노무관리	단체협력	· 사회단체 + 노사관리
올림픽체육과	스포츠마케팅	시설운영	· 시설운영팀 신설 및 마케팅 업무 이관
관광정책과	관광기획	관광정책	· 부서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문화예술과	문화재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평창권역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평창·미탄)

### ② 담당 신설

부서명	담당	주요 내용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 문화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올림픽체육과	시설운영	· 체육시설 관리·운영
건강증진과	대화권역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방림·대화)
건강증진과	봉평권역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봉평·용평)

※ 진부권역(건강생활지원센터)

### ③ 담당 폐지

부서명	담당	주요 내용
정책담당관	총괄정책	· 기획팀 업무 중첩(기능 쇠퇴)
정책담당관	사업발굴	· 공모사업팀 업무 중첩(기능 쇠퇴)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치매안심	· 정신·치매 통합 및 이관(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 의료관리팀 통합 운영

### ④ 담당 이관

기능(업무)	현 부서	이관 부서	주요 내용
인구정책	정책담당관	기획예산과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해예방	건설과	안전교통과	· 사회·자연재난 업무 소관부서 일원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2.) 결과, 의견 2건(별첨)
  - 평창군 공고 제2024-637호, 행정과-9780(2024. 4. 19.)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7855(2024. 5. 20.)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7855(2024. 5. 20.)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7851(2024. 5. 2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실-7973(2024. 5. 22.)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8095(2024. 5. 24.)호]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 경제건설국”을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기획실”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의 제목“(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를“(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올림픽체육과”를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로,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를 “세정과, 회계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조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2호) 중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8호) 중 “인사·조직·올림픽·체육행정·복지·민원·세무·교육”을 “기획·교육·복지·세무·회계”로 한다.

2. 기획, 예산, 법무, 감사, 홍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건설국”을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문화관광·인허가·경제·일자리·환경·산림·안전·재난방재·건설행정·도시개발·경관”을 “관광·문화·올림픽유산·체육·경제·민원”으로 한다.

7.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국제행사,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기업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20.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
9.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자연휴양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도시개발·경관·인허가·건설행정·안전·재난방재·산림·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를 “군에”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산물유통”을 “농산물유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농기계”를 “축산농기계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재정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을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경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경제건설국장,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실·과·소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실·과·소·단장”을 “국·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㉑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농산물유통과장, 기획실장”을 “농정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㉔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㉘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㉙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㉚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㉝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㉞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과장, 관광문화과장”을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㉟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토지과장, 관광문화과장”을 “기술지원과장, 관광정책

과장”으로 한다.

③⑥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⑦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⑧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③⑨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⑩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⑪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⑫ 평창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⑮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⑯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7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④8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p>	<p>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                      ----- <u>담당관·과장</u>-----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지원국, 경제건설국을 둔다.</u></p>	<p>제3조(국의 설치) -----                      ----- <u>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u>-----                      -----                      -----.</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u>군수 밑에 정책담당관을 둔다.</u>  <u>&lt;신 설&gt;</u>                      ② 부군수 밑에 <u>기획실을 둔다.</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lt;삭 제&gt;                      ② <u>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u>                      ① ----- <u>행정담당관</u>-----.</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u>행정지원국에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를 둔다.</u>                      ② <u>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u></p>	<p>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u>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u>-----                      ----- <u>세정과, 회계과</u>-----                      -----                      -----                      ② <u>기획재정국장</u>-----</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u></p> <p>3. <u>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u></p> <p>4. <u>국제행사,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u></p> <p>5.·6. (생략)</p> <p>7. <u>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u></p> <p>8. <u>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9. ~ 11. (생략)</p> <p>12. <u>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u></p> <p>13. <u>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u></p> <p>14. <u>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u></p> <p>15. <u>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p> <p>16. <u>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 예산, 법무, 감사, 홍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u></p> <p>3. <u>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u></p> <p>&lt;삭제&gt;</p> <p>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6. ~ 8.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9. <u>공유재산</u>-----</p> <p>-----</p> <p>---</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u>관한 사항</u></p> <p>17. <u>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p> <p>18. 그 밖의 <u>인사·조직·올림픽·체육행정·복지·민원·세무·교육에 관한 사항</u></p> <p>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u>경제건설국에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u></p> <p>② <u>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생략)</p> <p>2.·3. (생략)</p> <p>4. ~ 6. (생략)</p> <p>7. <u>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8. <u>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u> <u>사항</u></p> <p>9. <u>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u> <u>원에 관한 사항</u></p> <p>10. <u>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공장</u> <u>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lt;삭제&gt;</p> <p>10. ----- <u>기획·교육·복지</u> <u>·세무·회계</u>----- -----</p> <p>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u>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를 둔다.</u></p> <p>② <u>관광경제국</u>----- -----.</p> <p>1. (현행과 같음)</p> <p>5.·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2. ~ 4.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p> <p>7. <u>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u> <u>관한 사항</u></p> <p>8. <u>국제행사, 특구 지정 및 개발</u> <u>에 관한 사항</u></p> <p>9. <u>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u> <u>한 사항</u></p> <p>10. <u>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11. <u>기업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u>	11. <u>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12. <u>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12. <u>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13. <u>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3. <u>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
14. <u>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u>	14. <u>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u> <u>사항</u>
15. <u>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u>	15. <u>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u> <u>관한 사항</u>
16. <u>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	16. <u>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공장</u> <u>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u>
17. <u>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7. <u>기업유치, 기업지원에 관한</u> <u>사항</u>
18. <u>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u>	18. <u>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u> <u>및 추진에 관한 사항</u>
19. <u>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u> <u>사항</u>	19. <u>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u> <u>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u>
20. <u>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u> <u>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u> <u>관한 사항</u>	20. <u>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u> <u>시행에 관한 사항</u>
21. <u>안전관리, 사회재난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u> <u>사항</u>	<삭 제>

현행	개정안
<p>22.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3.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4.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6. 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27. 그 밖의 문화관광·인허가·경제·일자리·환경·산림·안전·재난방재·건설행정·도시개발·경관에 관한 사항</p>	<p>21. ----- 관광·문화·올림픽유산·체육·경제·민원----- ----- -----</p>
<p>&lt;신설&gt;</p>	<p>제6조의2(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p>

현행	개정안
	<p><u>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u>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u></p> <p>5. <u>건축·농지·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p> <p>6. <u>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7. <u>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8. <u>안전관리,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u></p> <p>9. <u>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p> <p>10. <u>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p> <p>11. <u>자연휴양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u></p> <p>12. <u>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u></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설치)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결과

## ○ 제출의견

제출기관(부서)	주요내용	비고
평창군의회 (사전설명)	· 행정담당관 ⇨ 부군수 직속 개편(찬성)	
	·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분과(찬성)	
	· 인구정책팀 ⇨ 기획예산과 이관	
	· 도서관팀 ⇨ 문화예술과 부적합	
인재육성과	· 인재육성과 ⇨ 기획재정국 소속 변경 건의	
	· 인구정책팀 ⇨ 인재육성과 소속 부적합	
	· 도서관팀 ⇨ 인재육성과 존치(문화예술과 이관 반대)	

## ○ 검토결과

제출기관(부서)	검토결과	결과
평창군의회 (사전설명)	· 행정담당관(행정과) ⇨ 부군수 직속 개편(찬성)	반영
	·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분과(찬성)	반영
	· 인재육성과 소속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변경	반영
	·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 문화예술과 3팀(문화예술, 국가유산, 문화시설) 운영	반영
인재육성과	· 관광경제국 소속 인재육성과 기획재정국 소속 변경 ▶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 업무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업무협의 잦은 상황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 국 변경	반영
	· 인재육성과 소속 인구정책팀 기획예산과 소속 변경	반영
	·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 문화예술과 3팀(문화예술, 국가유산, 문화시설) 운영	반영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